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 고용노동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용)」 1-4판 참조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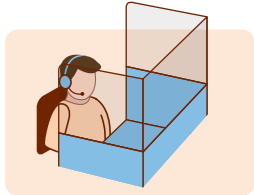


- 전담 조직(전담자) 지정, 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안내·전파
- 의심환자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사무실 환경개선



- 노동자간 간격을 최대한 확대하고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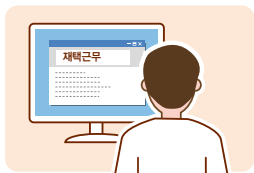


- 노동자 사이에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90cm)



- 다중이용공간 일시 이용 제한, 집단행사 및 각종 모임 등 연기 또는 취소

3 근무형태 관리



- 유연근무제 활용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점심시간 시차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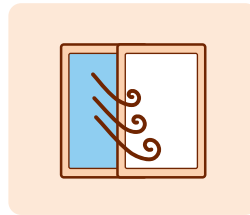


- 연차휴가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업무·인사 등 불이익 금지)

4 위생·청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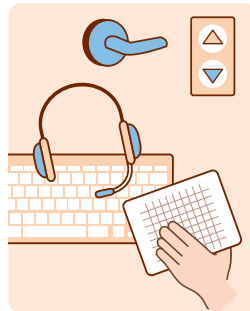


-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1일 3회 이상)

* 「코-숨」 활용(QR코드) 적정 환기량 계산



- 책상, 의자, 사무기기, 손잡이, 난간, 스위치 등 소독(1일 1회)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접촉면에 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소독(1일 1회)
- 사무실, 휴게실, 복도 등 다수 이용 공간 청결 유지, 소독(1일 1회)
- * 약국 판매 소독용 알콜 등 사용 가능

5 의심증상 대비 및 발생 시 조치



- 종사자의 호흡기 증상(기침 등) 확인 (1일 1회 이상)

- 자체 발열(37.5℃ 이상) 모니터링* 실시(출근 시, 1일 2회 이상)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 등 활용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있을 경우 재택근무·병가·연차 등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

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억해야 할 사업장 내 감염예방 수칙



사업장 기본 예방수칙



이행 미이행

전담체계 구축,
방역지침 안내·교육*



이행 미이행

시간을 나누어 출·퇴근하고
유연근무 및 휴가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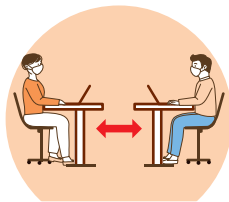
이행 미이행

불필요한 출장·대면회의
·사적모임 자제하기



이행 미이행

근무 중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퇴근 조치



이행 미이행

사무·작업공간
밀집 최소화 하기



이행 미이행

사무·작업공간 및 용품
주기적 소독·환기

* 방역수칙 교육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밀집시설(기숙사, 샤워시설, 구내식당, 휴게 시설 등) 예방수칙



이행 미이행

밀집시설 이용 전·후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이행 미이행

여러명이 모여서 흡연하거나
동시간 다수 이용 자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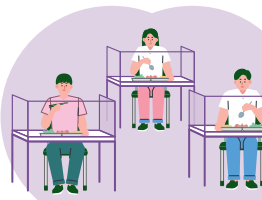
이행 미이행

밀집시설 자주 소독,
환기하기



이행 미이행

취식 외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이행 미이행

식사 시에도
거리두기·칸막이 설치



이행 미이행

공용집게 등은 사용 전·후
소독 또는 장갑 착용
음식은 가급적 개인별 덜어먹기

개인 위생 관리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의 첫걸음입니다.